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. 4. 28 선고 2020가단398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4. 14.

판 결 선 고 2021. 4. 2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남도 태안군 D 대 239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“가”부분 95㎡ 지상 조적조 함석지붕 단층 창고건물을 철거하고, 위 “가”부분 95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하선화

별지